

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1. 3. 15.>

검사확인 표시(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)

1. 기본도안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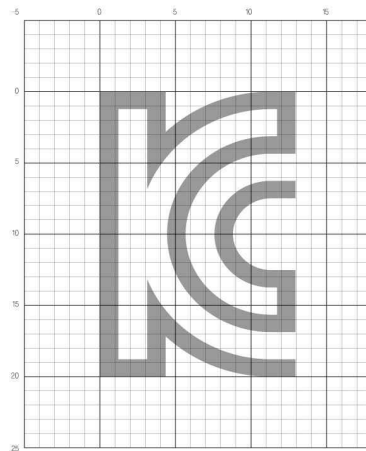
소금검사확인



품질검사기관명

2. 도안 요령

가. 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

나. 마크 및 글자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다. 마크 및 글자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사용한다.



라.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R 6/4 색채),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 또는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을 사용할 수 있다.

	금색 10YR 6/4
	은색 N 7
	검정색 N 2

3. 표시방법

가. 도안은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측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바꿀 수 있다.

나. 도안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날인 또는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마크 우측에 "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."를 표시할 수 있다.

소금검사확인



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
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.

품질검사기관명